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

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 · 인공지능정부실 · 자치혁신실 · 지방재정경제실 · 참여혁신국 · 조직국”을 “운영지원과 · 참여혁신조직실 · 인공지능정부실 · 자치혁신실 · 지방재정경제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0호부터 제76호까지를 각각 제51호부터 제7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9호”를 “제5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50호부터 제76호”를 “제3항제51호부터 제77호”로 한다.

49.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 운영

50.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 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13조제3항에 제88호부터 제9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87호”를 “제96호”로 한다.

88.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89.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90.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1.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2.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9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9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 정비

9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96.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 · 지원사업의 추진

제14조제3항제47호 및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8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제47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0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0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를 “제3항제24호부터 제4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1호부터 제62호”를 “제3항제47호부터 제59호”로 한다.

14. 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 계획의 총괄 수립 및 시행

15. 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 조정

16. 지방재정 ·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 4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계획의 총괄 수립 및 시행
- 45.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 46.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제15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참여혁신국)”을“(참여혁신조직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참여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의2(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국장”을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4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5.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 3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 3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 38.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9.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 4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4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4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 4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 4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 4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 46.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 47.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48.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 50.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④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둔다”를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을 “구호”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중전의 제20호) 중 “수습지원”을 “재난현장지원”으로 한다.

20.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재난현장지원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23.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24.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제2항 후단 중 “117명”을 “1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명(5급 5명)은 산업통상부”를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로, “2명

(5급 2명)은 고용노동부”를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재난복구지원국”을 “재난복구지원국,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4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653”을 “1,702”로, 일반직 계 “1,623”을 “1,672”로, 고위공무원단 “36”을 “3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553”을 “1,601”로, 전문경력관 “20”을 “1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64조제1항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가. 참여혁신조직실	2명
나.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관	1명
다.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 1개 과	4명
라.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1개 과	10명
마.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	0명
바.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1개 과	2명
사.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관 1개 과	7명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	0명

[별표 5]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5조 관련)

1. 제6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2. 제6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3. 제6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6급 이하	2

4. 제6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u>운영지원과·인공지능정부실·</u> <u>자치혁신실·지방재정경제실·</u> <u>참여혁신국·조직국</u>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②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 <u>운영지원과·참여혁신조직실·</u> <u>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u> <u>지방재정경제실</u>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8. (생략) 49. <u>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신설>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8. (현행과 같음) 49. <u>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운영</u> 50. <u>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 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u> 51. ~ 77. (현행 제50호부터 제76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50호 ----- -----. ⑥ ----- 제3
50. ~ 76. (생략) ④ (생략)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	

3항제5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자치혁신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항제51호부터 제77호----- -----. 제13조(자치혁신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7. (현행과 같음) 88. <u>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u> 89. <u>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u> 90. <u>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91. <u>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92. <u>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u> 93. <u>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u> 94. <u>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u> 95. <u>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u> 96. <u>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u>
---	--

④ ~ ⑥ (생 략) ⑦ 균형발전국장은 제3항제7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4. ~ 40. (생 략) <신 설>	<u>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96호----- -----.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 계획의 총괄 수립 및 시행 15.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16.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17. ~ 43. (현행 제14호부터 제40호까지와 같음) 4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계획의 총괄 수립 및 시행		41. ~ 44. (생 략) 45.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46.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47.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48. ~ 56. (생 략) 57.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58.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9.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60.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 6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47. ~ 50. (현행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와 같음) 45.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46.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삭 제> 51. ~ 59. (현행 제48호부터 제56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 ----- --- 제23호----- -----.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 제3항제24호 부터 제46호----- -----.
⑥ 지역경제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 제3항제47호 부터 제59호----- -----.
제15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1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
1. ~ 33. (생략)	③ 실장----- --.
<신 설>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신 설>	35.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신 설>	3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
<신 설>	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 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신 설>	3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의 지원
<신 설>	38.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 ·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신 설>	39.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신 설>	40. 전문입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신 설>	4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 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신 설>	4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신 설>	4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 ·개선
<신 설>	4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신 설>	46.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 기능의 총괄·조정	
<신 설>	47.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신 설>	48.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의 지원	
<신 설>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신 설>	50.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6.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신 설>	④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7.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신 설>	⑤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8.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9.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제16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2.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			13.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 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 한 사항	
14.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1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7.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 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 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0. (생 략)	
11.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 19.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 ----- 두 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 -----.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구호----- -----	
12. ~ 19. (현행과 같음)	
20.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21.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신 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2. 재난현장지원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3.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24.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0.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 계부처 합동 <u>수습지원</u> 계획 수립	25. ----- -- <u>재난현장지원</u> ----- ----
21. · 22. (생 략)	26. · 27. (현행 제21호 및 제22 호와 같음)
제55조(직무) <u>국가정보자원관리원</u> (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 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 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 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 · 구축관리와 보호 ·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5조(직무) <u>국가정보자원관리원</u> (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1.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 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 율적 통합 · 구축관리와 보호 ·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		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2명)	----- 4명(5급 4명)은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		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u>고용노동부</u> -----
	<u>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u>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	-----
	<u>항</u>		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	-----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	-----
의 정원) ① (생 략)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② -----		소방위 1명)은 소방청, 1명(5급	-----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	-----		1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	-----
정원을 포함한다)은 <u>117명</u> 을 상	----- <u>122명</u> -----		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	-----
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	-----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
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		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
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	-----		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		해야 한다.	-----.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	-----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
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		략)	과 같음)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②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③ -----		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	-----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	-----		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	-----
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		통신국,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	-----
<u>농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u>	----- <u>2명(5급 2명)은</u>		난관리정책국·자연재난대응	-----
<u>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u>	<u>산업통상부</u> -----		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	-----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	-----		난대응국, <u>재난복구지원국</u> 및	----- <u>재난복구지원국, 국가</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53	1,702	+49
·	·	·	
·	·	·	
일반직 계	1,623	1,672	+49
고위공무원단	36	38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1,553	1,601	+48
·	·	·	
전문경력관	20	19	-1
·	·	·	
·	·	·	

같음)

③ -----

----- 2028
년 2월 29일-----
-----.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
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
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 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7